

사설

이타행 결집의 첫걸음

— '한가족봉사단' 발족을 환영하며

지난 17일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에서 '한가족봉사단'이 발족했다는 소식은 무더위 속에 감로수 같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게될 가족봉사단으로 매월 1회 이상 노인정봉사,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 장애인과 사랑 나누기 봉사, 복지시설의 김장 담그기 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떠나가리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무릇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들여 친절하게 보살펴주는 일이다.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어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봉사라면 이미 부처님께서 누누히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만일 빈궁한 사람이 재물을 보시하지 못한다면 남이 보시할때 수회(마음으로 귀의하여 종교적인 기쁨을 느낌)하는 마음을 내면 수회하는 복덕이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다.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보고 기쁜 마음만 일어나도 보시하는 것과 버금가는 봉사라고 하셨는데 이를 스스로 실천에 옮겨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 실천의 결과는 여간 큰 것이 아니리라.

봉사를 실천하자면 다음 세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마음에서 느껴야 한다. 공립한 이웃이나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 내가 당하는 일처럼 측은하게 여겨지는 자비로운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 둘째로는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느낌이 느낌으로만 사라진다면 봉사로 이어지지 못한다. 내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고 마음을 움직이듯이 남의 괴로움을 측은히 여긴다면 그 측은한 마음이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세번

째로는 이런 행동의 실천을 결집할 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측은한 동정심이 느껴지고 이를 돕기 위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 힘의 실천이 결집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번의 한가족자원봉사단은 실천의 결집이라고 생각된다.

보시가 개인의 복덕과 가족의 행복추구와 같은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 현대사회에 걸맞은 봉사로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다음 몇가지가 유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 남의 이름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이타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봉사를 했다는 행위의 전시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이어야 한다. 한두번의 마음 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개별적인 것이기 보다는 개별성이 모여 집합적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기본 집합체인 가족 봉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개개인이 아닌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실천하는 '가족봉사'는 바로 사회를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첫걸음이다.

내가 필요가 없어서 버리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나도 필요하지 않나 나누어 가지는 것이 봉사다. 내가 주고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이제 한가족자원봉사단이 발족하였으니 그 구성원 모두가 보시를 꼭꼭 실천할 일이며 주체하는 마땅히 그 길을 다양하게 여는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열린마당

사찰환경권

정신문화 훼손방지 '환경권' 입법추진

조성준 <국민회의 국회의원>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추진을 비롯해 곳곳에서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사찰환경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불교는 1천6백년전 우리나라에 공적으로 전래된 이후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문화의 기둥을 이루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찰환경권이 침해됨은 불교는 물론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문화를 훼손시키는 형위이다.

지난 6월17일 서울고법에서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추상적인 환경권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환경권이 왜 추상적인 개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두달 사이

서울에는 여섯 차례의 오존경보가 발령됐다. 전남 여천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어 이주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환경과 파괴의 파괴임을 확인해주는 사례이다.

사찰환경권은 우리 정신문화의 발원지 사찰을 수행도량에게끔 하는 불교의 존립권이다. 사찰환경의 파괴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파괴에 머물지 않는다. 불교의 요체인 수행환경을 파괴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행환경권은 즉각 보호되어야 한다.



우선 기존관계법령에 규정한다면 전통사찰보존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등에 사찰환경보존 및 관리에 관한 개발조항을 들수도 있다.

보다나에 입법정책적 방향은 문화유산보존법(가칭)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사찰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및 재산권, 개발권 등 다른권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사찰환경보존 및 계승·발전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통한 조강하고 쾌적한 환경문화유산을 조성하는 기본이며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어 단절없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헌법정신을 반영하는 길이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의무' 헌법에 명시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사찰환경권은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어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의 내용을 이루며,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무(헌법 제9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헌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 행복추구의 실질적 바탕을 마련해 주기위한 내면적인 정신생활보호규정(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바탕위에 민족문화의 창달의무를 헌법

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찰환경권은 이와 같은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을 포괄하는 특수한 환경권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사찰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국가가 법률로 정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헌법 제35조 2항)



민족문화유산보호법 제13조(종교시설에 출입하거나 종교시설 소유의 토지의 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인 경우는 미리 그 종교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

제13조(종교시설에 출입하거나 종교시설 소유의 토지의 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인 경우는 미리 그 종교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

제18조(보존 문화유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내지 및 대통령령이 정한 구역안에서는 포교 도제양성 역경(전법·수행)등의 불사목적이라는 일체의 개발행위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개정해야 한다.(연기영교수 의견)

제19조(지역 지구 및 지구안 이밖에 사찰환경권과 관련된 법률로 자연·도시공원법 및 도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및

명문화 시급한 관계 법령들

전시법·자연공원법등 개정통해 사찰문화유산 보호권 강화해야

도시행령, 도시계획법 및 도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법 및 도시행령, 건축법등이 있다.(조계종 불교관계 국가법령 개정안 참조)

조계종 종단현안문제해결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은 자체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하고있으며 사찰이 고유한 종교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해사찰과 소속 종단의 자율성 존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18조(관리 및 재정):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찰이 소속한 종단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

제19조(타인의 토지의 출입

현대만화

호도합시다

목어

어머니의 품

이렇게 부수면 통일이 되는거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정거농성을 벌였던 연세대 캠퍼스에서 흘러나온 어느 인사의 말이다.

9일간의 투쟁의 무대였던 연세대 종합관과 과학관. 20일 경찰의 '독수리' 진압작전 직후 언론은 그곳을 '아수라장' '전쟁터의 폐허' '화재현장'을 방불케 했다고 표현했다.

아수라장이란 어떤 곳인가. 싸움을 일삼는 귀신 아수라가 제식

세쌍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착한말이란...

말씀마다 자기를 러습히지 않고 남 또한 해치지 않는 것을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정없이 말로 남을 기분게 하여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다. (장어장경)

흥국사 주지 회령 TEL.(0346)65-8010

ASEM을 빙자한 무역협회 고층건물신축에 대한 봉은사의 입장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10년(794년) 연희국사에 의하여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덕고승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병자호란 당시에는 항마군에 결집했던 호국불교의 중심지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역불정척에 의해 꺼져가는 불교를 중흥시킨 호법도량이었으며, 현재 그 위상에 걸맞게 30여 스님과 10만 신도가 수행 도량으로 삼고 있는 도심 최대의 전통사찰이다.

봉은사는 현재 신도들의 기도도량으로써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의 휴식처로, 학생들에게는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곳이다. 이렇듯 봉은사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자연적 가치 조화롭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이처럼 문화적 역사적으로 귀중한 천년고찰 봉은사가 대규모 건축 계획에 위협받고 있다. 일주문에서 고작 100m 거리에 국제회의를 위한 대규모 건물 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천년간 지켜온 우리 봉은사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다.

강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한 곳이다.만약 이곳에 대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필연적으로 교통난과 대기오염의 가중, 국토의 불균형 개발의 심화 현상이 발생할것이다. 또한 강남 유일의 녹지공간인 봉은 근린공원 주변개발에 명분을 주어, 그나마 가뭄은 녹지마저도 훼손될 것이다.

이에 전통사찰을 수호하고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각오로 교통난 대기오염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위협에 맞서 주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ASEM회의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무역협회의 대규모 건물신축을 반대한다. 무역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건물신축을 구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대규모 단지 조성이 ASEM을 위한 국제사업인양 선전하고 있다.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센터가 부득이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사무실 2개동(45층, 36층), 백화점, 호텔 (23층 800실 규모) 등은 ASEM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익사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사업이라는 무역협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판전을 비롯한 귀중한 전통 문화재의 훼손과 불자들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이번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봉은사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물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각종 문화재가 상당수 보존되어 있다. 또한 봉은사 자체가 살아있는 불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현재 봉은사 주변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다. 운봉빌딩 신축 금지 판례는 문화환경보존 가치를 인정해준 좋은 예이다. 각종 공해와 소음으로 고즈넉한 전통사찰의 면모를 잃게 되고 스님들의 수행생활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따라서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문화환경과 수행환경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불러 올 이번 대규모 신축공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3.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번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20여만 평 이상의 규모로 지어질 이번 신축 건물은 정상적인 경우, 공사 허가 기간만도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조속한 공사 허가를 시달한 바 있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초래할 부실공사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기상 촉박하다 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교통난 가중, 대기오염 가속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할 이번 대규모 건물 신축계획은 마땅히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신축건물의 217,606평, 주차장만도 70,399평으로 8,600대가 한꺼번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유통차량까지 합산한다면 아마 수만대에 이를 것이다. 주변에 교통 유발도가 높은 호텔, 백화점, 전시장, 사무실 등이 들어서 막대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는 주민들의 생활마저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마땅히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역협회가 제시한 계획안에는 교통대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교통난과 대기오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5. 봉은사는 사찰수호와 문화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30여 스님과 10만 신도들이 한뜻으로 뭉쳐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불기 2540년 8월 20일

무역협회 고층 건물 신축반대 봉은사 비상대책위원회